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6. 1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24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2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6월 13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징수과장 임태순

가. 제안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제14476호, 2016.12.27.공포, 2017.3.28. 시행)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에 인용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징수법」 등 인용조문 변경(3개 조문)
 - 지급대상(안 제2조), 지급(안 제7조), 환수(안 제8조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(4개 조문)
 - 목적(안 제1조), 지급대상(안 제2조), 지급기준(안 제3조),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제14476호, 2016.12.27. 공포, 2017.3.28. 시행)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」에 인용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

○ 검토의견으로는

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으며,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인용 조항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